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8. 10. 18.>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

V V L J S L	미세먼지	미세먼지	이산화	폼알데	총부유	일 산 화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(PM-10)	(PM-2.5)	탄소	하이드	세균	탄소
	$(\mu\mathrm{g/m^3})$	(μg/m³)	(ppm)	(μg/m³)	(CFU/m³)	(ppm)
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						
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						
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						
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						
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	100			100		
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	100	50		100	_	10
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	이하	이하	1,000	이하		이하
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			이하			1 -1
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						
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						
영업시설						
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	75	35		80	800	
인요양시설, 어린이집	이하	이하		이하	이하	
다. 실내주차장	200	_		100		25
	이하			이하	_	이하
라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	200					
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	200	_	_	_	_	-
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	이하					

비고

- 1.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- 2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

실내 미세먼지(PM-10)의 농도가 $200\mu g/m'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.$

- 가.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·배기관(급·배기구를 포함한다)
- 나. 중앙집중식 냉·난방시설의 급·배기구
- 다.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
- 라. 화장실용 배기관
- 마. 조리용 배기관